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04 발의연월일: 2021. 6. 1.

발 의 자: 송갑석·강병원·강훈식

김경만 · 김병욱 · 김홍걸

류호정 • 박영순 • 박찬대

박홍근 · 서삼석 · 서영교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안호영・양기대・양향자

어기구·오영환·윤영덕

윤준병 • 이규민 • 이성만

이용빈 · 이장섭 · 임종성

전용기 · 정태호 · 조정식

허 영ㆍ허종식ㆍ홍성국

황유하 의원(34인)

제안이유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세계최초로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2019년, 2020년, 2년 연속으로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보급량 세계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음.

아울러, 기업들도 수소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의 관심과 참여도 커지고 있음.

최근의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이며, EU,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였음.

이와 같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 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청정수소의 사용이 탄소중립을 실 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

이에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청정수소·청정수소발전·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신설).
- 나.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 다.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및 인증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

설).

- 라.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판매·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 마.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발전량 및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 바. 판매·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 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함(안 제25조의6 신 설).
- 사. 청정수소 제조시설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안 제57조제5호의2 신설).
- 아.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청정수소"란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 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로서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를 말한다.
 - 7의3. "청정수소발전"이란 청정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 사업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제4장의2(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 등

-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청정수소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량과 구매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의 제조자는 청정수소의 표시를 하거나 이 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취소) ①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위임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청정수소 제조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정수소를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청정수소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인증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4(청정수소의 판매·사용 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판매·사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 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판매·사용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사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사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사용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5조의5(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발 전량 및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발전사업 자와 구매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발전구매량 및 수소발전구매량(이하 "의무구매량"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3. 수소발전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 등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무구매량을 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의6(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판매·사용의무자 및 구매의무자가 의무판매·사용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

- 1. 판매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과징금 및 가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 구매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과징금 및 가산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과징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제57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제조시설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 증기관의 임직원

제62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의2. "청정수소"란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
	출하는 수소로서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를 말한
	<u>다.</u>
<u><신 설></u>	7의3. "청정수소발전"이란 청정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
	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
	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발전사업자로서 수소발전
	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 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청정수소의 개발·생산·

7. · 8. (생 략) ③ ~ ⑤ (생 략) <u><신 설></u>

<신 설>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 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 에 관한 사항

- 7. · 8.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 등
-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
 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
 소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 관을 지정하여 청정수소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청정수소의 제조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조량과 구매자에 관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④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의 제 조자는 청정수소의 표시를 하 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5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취소)

- ①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위임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청정수소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정수소 를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청정수소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인증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청정수소의 판매・사 용 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 급시설의 운영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판매· 사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사용의무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 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판매·사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사용의무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사용의무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u><신</u>_ 설>

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5(청정수소발전 구매의 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 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정수소발전량 및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발전사업 자와 구매의무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발전 구매량 및 수소발전구매량(이 하 "의무구매량"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 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 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3. 수소발전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청정수소발전 구매 의무 등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 관으로 하여금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의무구매량을 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과징금)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판매·사용의무자 및 구매의무자가 의무판매·사 용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징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 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한다.
- 1. 판매의무자에게 정수하는 과 징금 및 가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 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
- 2. 구매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과 징금 및 가산금: 「전기사업 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 금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 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 는 징수한 과징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6. (생략)

②·③ (생 략)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
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
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
소 제조시설 인증업무를 수행
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제62조(과태료)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청정수소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